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일몰기한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9개 중소기업부고시 일괄개정고시

제1조(「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운영요령」의 개정)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유효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의 개정)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중소기업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개정)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계획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제5조(「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의 개정)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소상공인 용자사업 운영규정」의 개정) 소상공인 용자사업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의 개정)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유효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8조(「중소벤처기업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의 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우수 그린비즈(Green-Biz) 제도 운영규정」의 개정) 우수 그린 비즈(Green-Biz) 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u><신 설></u> | <u>제43조(유효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u> |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 일부개정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신 설></u></p> | <p><u>제20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 부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 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 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 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u>제69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 일부개정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 <p>5. <u>재검토기한</u></p> <p style="padding-left: 2em;"><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계획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u></p> |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3월 26일까지로 한다.</p> | <p>제34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

소상공인 용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4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5월 9일까지로 한다.</p> | <p>제46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일부개정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9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u>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u>」에 따라 2020년 00월 0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0월 0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 <p>제39조(유효기한) 이 고시는 「<u>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u>」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

중소벤처기업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신 설></u></p> | <p><u>제11조(재검토기한) 중소기업 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 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 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 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

우수 그린비즈(Green-Biz) 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신 설></u></p> | <p><u>제21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 부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